제6회 서촌초등학교 ·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위원회(임시회)

임시회의 회의록

2023년 12월 12일(화) 14:30	간사	위원장	학교장

의사일정

1	2023학년도 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2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계획
3	2023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4	2023학년도 초빙교사 운영보고서 제출
5	서촌초병설유치원 유치원 규칙 개정
6	2024학년도 학사일정 계획
7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및 강사채용 계획
8	다문화학생 프로그램 운영계획
9	2023학년도 서촌초등학교회계 2차 추경 예산

· 위원장: 운영위원 정원 11명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학부모, 지역) 7인			
권○○	채○나	박○○	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송○○	고○주	이○○	
출석	출석	출석	
출석위원(교원) 4인			
최○○	김○○	김○○	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제1안건> 2023학년도 학교학생 생활인권 규정 개정 심의 건

1. 제안자 발언

2023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제안내용

1. 제안 사유

2023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주요 개정안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규정 전반	삭제	제44조 (출결사항) 제45조 (경조사 출결) 제46조 (개근 및 정근) 제47조 (결석의 종류) 제57조 (등하교)	삭제 권고	위 조항은 학교규칙의 내용으로 학교생활인권 규정에서 분리하여 학교 규칙으로 이동하거나 삭제 하여야 함.
4조~12조	단어 수정	재심 재심청구 재심결정 재심여부심의 등	재심의 재심의 청구 재심의 결정 재심의 여부 심의	'재심'은 퇴학의 경우 신청하는 용어로서 재심의 용어를 사용해야 함.
제11조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소집	추가	제1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도 절차에 의거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일시,장소,이유'를 서면통지한다.	2023 학교생활 인권 규정 운영안내 개최서면통지

		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2022 점검지원단 수정사항 반영x
12조	수정	제12조 (생활교육 처분의 심의 및 재심의) 1.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에게 훈계,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부과 등 학생선도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에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부과 등 학생선도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23 학교생활 체크리스트 43 : 운영 지침 외의 처분은 내릴 수 없음.
12조	추가	제12조 (생활교육 처분의 심의 및 재심의)	⑥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척, 기피, 회피 및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비 신청 내용, 위원회 안내 내용 없음.
제12조 재심청구	수정	제12조 5항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체크리스트 48)
	신설	행정소송 안내 없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체크리스트 48)
14조 생활교육 처분	추가	제14조 3. ②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이어서) ~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의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202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제17조 생활지도 처분내용 통보	수정	제17조 (생활지도 처분내용 통보) 생활지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지도 처분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며 징계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제17조 (생활지도 처분내용 통보) 생활지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지도 처분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며 징계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단순 오기로 수정 권고(기잔) 2022 점검지원단 수정사항 반영x
제2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설	관련사항 없음(25조 신설 또는 24조 수정 권고=)번호가 밀리는 문제로 수정 용이)	④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만 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및 선거 운동 등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선거 운동 및 홍보에 대한 제한은 15조 학생자치회의 게시물 판단에 준하여 결정한다.	2022 점검지원단 수정사항 반영x 2022 점검지원단 수정사항 반영x
제26조 훈계 및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수정	4.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인권친화적 생활교육) - 기타 생활선도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적 조치 5.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선도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6.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인권친화적 생활교육) -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에서 마련한 교육적 조치 7.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23 학교생활 인권규정 운영안내 관련 규정 수정 (선도위원회) 2022 점검지원단 수정사항 반영x
제28조 용의복장	단어수정	제28조 (용의복장)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단정한 몸차림을 해야 한다. 8.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9.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실내화, 운동화 등) 10.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 ④ 학생의 두발은 길이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28조 (용의복장)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단정한 몸차림을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12.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13.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용품을 착용하되, 실내.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실내화, 운동화 등) 14. ③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5. ④ 학생의 두발은 길이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제안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2023 점검지원단 =)'단정한,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검소한, 불쾌감, 위화감' 등에 대한 기준과 규범인지에 대한 명확함을 권고함. 또는, 해야한다를 권한다로 수정 권고 또는 28조 삭제 권고 2022 점검지원단 수정사항 반영x
54조 전교어린이회	단어수정	전교어린이회, 어린이회	학생자치회, 자치회	단어수정 권고
55조 학급어린이회		전교어린이회, 학급어린이회	학생자치회, 학급자치회	단어수정 권고
54~55조	수정 및 삭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나 수정하기 어려운데, 학생자치회 관련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 되어있음.	체크리스트 참고하여 독립적 자치활동 보장 규정,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보장 및 학교 정책결정 참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외하고 *기타 자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라는 규정만 남겨두고 별도 운영하는 방법 추천	
제 5 4 조 전교어린이회	수정	관련사항 없음(55조 신설 또는 54조 수정 권고=)번호가 밀리는 문제로 수정 용이)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회실 및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학생자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2023 학교생활 인권 규정 운영안내 자치활동의 권리 2022 점검지원단 수정사항 반영x

제 10 조【훈육】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가용인원-교무실 직원 및 안전지킴이등)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인계시 학생정보등학부모연락처 공유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20분)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⑧ 학교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1일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나 1일후 되돌려줌 ※ 담임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보관하고,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자율관리함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교무실에서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보관하고,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1 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2 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중략>.....

부 칙

제 78 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경우, 고시 내용을 반영한 제 2 장, 제 3 장 등을 우선한다.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주요 개정안에는 쓰지 말아야할 단어가 삭제 되어 있으며, 항목번호 세부 수정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심의가 있었으며 교실내 분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어수정 권고로 인해 전교어린이회, 학급어린이회 명칭이 학생자치회, 학급자치회 등으로 바뀌었으며 생활인권 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학운위원 : 20분 지각이면 무조건 미인정 지각이 되는지요?

- 미리 연락이 학부모님과 연락이 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미리 전화 없이 늦었으면 무단지각이 됩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2안건>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계획 심의(안) 건

1. 제안자 발언

겨울방학 독서교실 행사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 활동할 기회를 마련하고저 합니다.

2. 제안내용

가. 대상: 본교 1~5학년 대상

나. 기간: 1월 8일(월)-1~2학년 대상15명, 1월 9일(화)-3~5학년 15명

다. 시간: 9:30 ~ 11:00 (90분)

라. 주제: 책 표지를 그려보자

마. 운영: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집행

방학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2가지 프로그램(방학독서교실, 도서관 책달력)을 진행하며, 방학 독서교실에서 선정된 작품은 매월 발행하는 도서관 신문에 실을 예정이며, 책달력행사는 종료 후 도장개수(6단계)에 따라 참여한 학생에게 기념품을 지급한다.

-세부 운영사항

가. 도서관 개방 및 휴관

1) 대상: 본교 유치원, 1학년~6학년 전교생
2) 장소: 2층 도서관
3) 개방: 2024. 1. 8.(월) ~ 2024. 2. 16.(금)
4) 휴관: 2월 9일(설날연휴), 2월12일(대체공휴일),
2월19일~29일(장서점검 및 신학기 준비 기간)

나. 겨울방학 행사 '독서교실'

1) 대 상 : 1월 8일(월)-1~2학년 대상 15명, 1월 9일(화)-3~5학년 15명
2) 장 소 : 2층 도서관
3) 기 간 : 1월 8일(월) ~ 1월 9일(화) 오전9시30분~11시00분
4) 주 제 : 책 표지를 그려보자
5) 신청방법 : 투게더 알리미(선착순 15명)
6) 세부운영계획

날짜	주제	세부 내용	재료
1/8(월) ~ 1/9(화)	책 표지를 그려보자	- 내용은 같고 표지가 다른 책 소개하고 생각 나누기 - 나만의 책 표지 만들기 및 다양한 독후활동지 작성	활동지 기념품 준비

다. 겨울방학 행사 '책달력'

1) 대 상 : 본교 1학년~5학년 전교생
2) 장 소 : 2층 도서관
3) 기 간 : 2024.1.10.(수) ~ 2024.2.16.(금) 26일간-휴관 및 공휴일 제외
4) 양 식 : <붙임.1>파일 참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달력 종이를 받는다.
5) 참여방법 : 1. 책 달력 양식은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방문한 날 배부한다.
2. 겨울방학 동안 학교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 이외의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
3. 완성된 책 달력은 방학 마지막 날(2월 16일) 도서관에 제출하고, 도서관 이외의 곳에서 참여하는 학생은 독서록으로 작성하여 3월 8일(금)까지 제출한다.
4. 도장 개수에 따라 다른 기념품을 받는다.

<도서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산집행계획

예산	항목	금액(원)	내역
독서교육비 >도서관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운영비	책달력	300,000	▪ 도장 6단계 개수에 따라 선물 증정되며, 개학 후 책달력 참여 학생수에 맞추어 물품을 산출하여 구입 예정임.
	독서교실 운영비	150,000	▪ 학용품 150,000원
총 금액		450,000원	

-기대효과

겨울방학 중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학기 중 책을 가까이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독서의 습관화를 길러주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작년까진 대상은 1-6학년이었는데 이번엔 1-5학년 대상이며 5학년 신청 아동 위주로 1-명 내외에서 작품활동 계획이 있으며 12월15일 가정 통신문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학운위원 : 먼저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관심 가지는 것 같고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도서관이 리모델링 이후 고학년들도 도서관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학운위원 : '책달력' 행사는 여름방학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지요?

-네. 작년엔 64명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40분간 책 읽으면 도장 찍어주고 여행 가는 경우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3안건> 2023 겨울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심의(안) 건

1. 제안자 발언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제안내용

가. 운영 기간 및 시간

- 운영 기간: 1월 08일(월) ~ 2월 29일(목)
- 방학 기간: 1월 08일(월) ~ 1월 12일(금), 5일간 방학(돌봄교실 미운영)
- 운영 시간: 9:00~17:00

나. 특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특강 프로그램 매일 2개 이상 운영
- 월:종이접기 / 화:전래놀이 / 수:클레이 / 목:아동미술 / 금:놀이체육
  (학교 사정에 따라 수업 시간표가 조정될 수 있음)

다. 급식 계획

- 급식: 1식 5,500원(급식업체: 담찬)
  (수익자 부담, 교육비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 지원함)

라. 안전관리

- 생활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
- 귀가 안전관리
- 성폭력 예방관리
- 급식 안전관리

-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ㅣ 운영 기간

	운영 기간	운영 일수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간	2024. 1. 08.(월) ~ 2024. 2. 29.(목)	30일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방학 기간	2024. 1. 08.(월) ~ 2024. 1. 12.(금)	5일
초등돌봄교실 새학기 준비기간	2024. 2. 28.(수) ~ 2024. 2. 29.(목)	2일

2.운영 개요

	오후돌봄 1반	오후돌봄 2반
반 구성	돌봄1반	돌봄2반
장소	돌봄1반 교실	돌봄2반 교실
운영시간	09:00~17:00	09:00~15:00
운영학생수	16명	17명
담당보육전담사	표경옥	노순영

3.급식 계획

	급식
개별 부담액	31일*5,500원=170,500원(겨울방학식 1일 포함)
업체	담찬
비고	급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신청자에 한해 제공함. 간식은 운용하지 않음.

4.돌봄교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

【돌봄교실 1반(1층 돌봄교실)】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9:00~10:00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10:00~11:00	종이접기	전래놀이	클레이	아동미술	놀이체육
11:00~12:00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12:00~13:00	손씻기 및 점심식사				
13:00~14:00	안전교육	기본생활훈련	안전교육	기본생활훈련	안전교육
14:00~15:00	전래놀이	클레이	종이접기	놀이체육	아동미술
15:00~15:20	생각나누기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15:20~16:20	자유선택활동	자유선택활동	자유선택활동	자유선택활동	자유선택활동
16:20~17:00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돌봄교실 2반(2층 돌봄교실)】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9:00~10:00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출석 개별과제
10:00~11:00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ebs방학생활
11:00~12:00	종이접기	전래놀이	클레이	창의미술	놀이체육
12:00~13:00	손씻기 및 점심식사				
13:00~14:00	전래놀이	클레이	종이접기	놀이체육	아동미술
14:00~14:40	안전교육	기본생활훈련	안전교육	기본생활훈련	안전교육
14:40~15:00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정리 및 귀가

가. 초등보육전담사 수업은 각 반 담당자에 따라 상이함.
나. 종이접기, 전래놀이, 클레이, 아동미술, 놀이체육 수업은 외부강사 및 전담사가 계속적으로 지도함.
다. 위 프로그램은 각 반 돌봄교실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5.운영시 유의사항

가. 결석 학생은 반드시 수업 전에 학부모에게 확인하고 출결 관리를 최우선으로 함.
나. 안전한 돌봄교실 생활이 되도록 하며 매일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실시함.
다. 매일 학교폭력·성폭력·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함.
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비상연락망 체제 정비하고 각 교실에 비치함.
마. 참여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철저히 함.
바.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함.
사.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시간(등하교시간 포함)준수하며 학부모에게도 사전에 공지함.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돌봄 1반은 16명, 2반은 17명이 참여 예정입니다.

학운위원 : 혹시 방학중 참여 아동인원이 취소할 경우 돌봄 대기 아동도 가능한지요?

- 전학으로 인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외 사유는 돌봄 대기 아동은 아직 돌봄에 입적된 상태가 아니어서 접근 자체가 다른 경우입니다.

학운위원 : 특강 프로그램이 매일 2개 이상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 특강 프로그램 5과목중 오전, 오후 지그재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4안건> 2023학년도 초빙교사 운영보고서 제출 건

1. 제안자 발언

교육과정 운영 관련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초빙하여 효율적이고 행복한 서촌 교육 공동체 만들기 위함입니다.

2. 제안내용:

-초빙 현황 및 개요

가. 초빙 교사: 김○○ (현 서촌초 교무부장)
나. 기　　간: 2023.3.1.~ 2027.2.28.(4년간)
다. 초빙 영역: 혁신학교 운영
라. 임용 당시 교육경력 및 주요 교육활동 실적
1) 2017년 부천송일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연구부장 역임(혁신학교 우수교)
2) 부천혁신학교 실천사례연구회 활동: 2018학년도~2020학년도
3) 2020년 경기도 혁신학교 아카데미 혁신학교 리더과정 이수
4) 기타 교육방송 활동, 학생자치 활동, 다문화 교육활동, 교육자료 개발 등 다수 (현 서촌초 교무부장)
나. 기　　간: 2023.3.1.~ 2027.2.28.(4년간)
다. 초빙 영역: 혁신학교 운영
라. 임용 당시 교육경력 및 주요 교육활동 실적
1) 2017년 부천송일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연구부장 역임(혁신학교 우수교)
2) 부천혁신학교 실천사례연구회 활동: 2018학년도~2020학년도
3) 2020년 경기도 혁신학교 아카데미 혁신학교 리더과정 이수
4) 기타 교육방송 활동, 학생자치 활동, 다문화 교육활동, 교육자료 개발 등 다수

- 2023학년도 초빙교사 운영보고

가. 혁신학교 운영
1)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2) 윤리적 생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3)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학교 자율과제와 연계) 노력
4)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학교 자율과제와 연계) 노력

나. 교무기획 업무
1) 학부모 활동 관련 각종 운영 보조
---신입생 학부모 교육(줌 회의) 운영, 학부모 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학부모회 등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계획 수립 및 운영
3) 기획위나 교직원회의 운영, 통합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사 운영(입학식, 졸업식, 방학 계획 등)
4) 자율장학 기본계획 수립, 포상 관리, 학교평가 운영, 학교-마을 교육협의회 운영

다. 교과 활동
1)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교육활동 전개 및 다양한 컨텐츠 활용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2) 생활 속 과학 학습: 과학을 통해 넓은 세상을 알아 나갈 수 있도록 창의 UP 학습 유도
3) 논리 학습: 쌍방향 수업에서 기본개념을 이용한 논리가 있는 설명으로 다양한 교과 역량 신장
4) 과정학습: 학습 내용 정리,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등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되도록 과정 학습 유도
5) 수업자료 개발: 에듀테크 및 교육용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자료 개발
6) 성장과 과정 중심 평가: 학생 성장중심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이해도, 성장도) 평가 및

- 초빙교원 활동 및 실적

1. 초빙영역(업무 및 교과)에 따른 교원별 교육활동 실적
가. 교무기획부장 교사 : 김상문(교무기획부장, 과학/도덕/안전한생활)-초빙 1년차

구분	영역	추진 내용
업무	1. 혁신학교 운영	○ 학교자율과제 및 혁신교육활동 운영 지원 - 학교자율과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 ○ (과제1)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 교육과정 중심 자율 System: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혁신에 동참하기 위해 학교 비전과 철학에 대한 이해의 장 마련과 협의회 실시 / 전결 규정 세분화를 통한 업무처리 간소화 등 - 업무 효율화 및 배움중심 조직: 업무처리 과정 단축, 회의 축소, 회의록 간소화, 각종 위

		원회 통폐합 운영 / 수업 사전 준비자료, 학습 결과물 등으로 구성된 교실, 복도 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변화: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 교환, 학교와 소통을 위한 학부모회 운영 / 학부모의 학교-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이해와 의견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등 -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지역교육자원(인적·물적)을 교과과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흥시 전역을 교육 현장과 연계 / 학생, 학부모의 정이마을축제 참여 ○ (과제2) 윤리적 생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 북스토리 인성교육: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인권 주간 운영,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학생 인권교육, 학교 안전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재난 대응 대피 훈련 등 운영 - 자율과 자치의 학생자치회: 입학식, 졸업식, 어울림축제 등 준비과정부터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운영 - 공동체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인식교육, 생명존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실시 ○ (과제3)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학교 자율과제와 연계) 노력 - 연수로 변화하는 학습공동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주제연수, 공동연구, 공동실천, 연구결과 공유) - HAHA(Happy Activity, Happy Attitude) 수업 실천: 학생 수준, 흥미, 특기 등을 고려한 교과관련 활동을 전개 및 학생의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수업 전개 - HAHA 수업실천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배움중심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료장학과 임상장학 등이 수시로 이루어짐 ○ (과제4)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학교 자율과제와 연계) 노력 - 배우는 즐거움과 삶의 역량을 기르는 주제 통합 학습: 학년교육과정 분석, 학년별 주제 선정,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배움과 삶을 통합하는 배움중심 수업을 실시 -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주제통합 학습 실시: 주제통합 학습(사람, 환경, 문화와의 어울림), 학기초 관계형성 프로그램(인성교육), 융합창의성향상 프로그램 등 - 책임 있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진단활동주간(3월) 운영 및 기초학력 진단평가 분석, 학습결손의 원인 파악 및 지도계획 수립, 부진 예방을 위한 배움중심 수업 운영, 디딤돌학습, 교과보충학습 등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 꿈 나래 펴기 진로교육: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특기와 적성계발을 위한 종합적성검사 실 및 결과 통지 / 체험활동과 연계한 진로교육활동 운영 등 - 꿈끼 쑥쑥 문화예술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체육교육 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의 인성, 감성, 체력 향상, 꿈을 찾고 끼를 발현하는 기회를 제공 / 도레미 하모니(컵타, 칼림바), 즐겁게 하모니(캘리그라피, 뮤지컬, 플래시몹), 춤사위 하모니(무용) 등의 프로그램 운영
	2. 교무기획 업무	○ 2023 신입생 학부모 교육(줌 회의) 운영 -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교육 실시 ○ 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계획 수립 및 운영 - 바뀐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님께 안내 ○ 2023 입학식 및 졸업식 운영 - 2023 신입생 입학식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식 실시 및 졸업식 예정 ○ 학사 운영 - 연간 학사일정 수립 및 월별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학년별 의견 수렴을 통해 학사 운영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2023 자율장학 기본계획 수립 - 학교 현황 자료 등 자율장학 기본계획 수립, 학교 현안 및 교육청 협의 사안 작성 등 ○ 2023 학부모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 학부모회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학부모회 단체 조직 - 학년별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 실시(성장중심 학생 평가 등) ○ 포상 관리 - 인사자문위원 구성 및 협의를 통해 교직원 표창 추천 ○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운영 -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1일형 주제별체험학습, 시흥창의체험학교 일정 운영 관리 ○ 학교평가 운영 - 학교평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교직원 연수를 실시 ○ 기획위원회 회의 및 전체 교직원회의 운영

		- 매월 각 학년 및 부서별 협의 사항을 수렴하여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협의 내용과 연수 등으로 전체 교직원회의를 운영 ○ 학부모회 운영 - 학부모회 대의원회 개최 및 학부모회 캠페인, 학부모회 연수, 어린이날 행사, 어울림 축제 및 정이마을 축제 참여 등 지원 ○ 학적 관리 - 미취학 학생 관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생 유예 심의, 유예(정원외 관리) 학생 안전 확인 등 ○ 6개 통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방과후·복지위원회, 인성·정화위원회, 교구선정 및 체육위원회 등 6개 통합위원회의 부속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 교직원회 조직 및 운영 -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 운영 규정을 정하고 운영 ○ 방학계획 수립 및 운영 - 안전한 방학을 위한 방학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함. ○ 학교-마을 교육협의회 운영 - 시흥 4권역(서촌초, 냉정초, 시흥초, 시흥중, 정왕고) 학교-마을 교육협의회 운영 및 참여

구분	영역	추진 내용
교과	1. 교육과정 재구성	○ 배움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전개 및 다양한 컨텐츠 활용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실시 - 과학과, 도덕과, 안전한생활의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재구성으로 학생들의 창의융합사고 역량을 강화 - 학생 감성과 소통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전개
	2. 학습, 평가, 기록	○ 생활 속 과학 창의 UP! - 과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넓은 세상을 알아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 속 과학 또는 창의UP 학습을 통해 더불어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이성과 논리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 ○ 논리 학습 - 쌍방향 수업에서 기본개념을 이용한 논리가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하여 발표 능력 및 논리를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교과 역량(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융합능력, 정보처리능력)을 신장시킴. ○ 과정 학습 - 수업시간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여 과학적 학습역량을 키우고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수업 자료 개발 - 에듀테크 및 교육용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자료 개발 ○ 평가와 기록 -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과 연계된 수행 평가 디자인 - 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과정 중심(이해도, 성장도) 평가 및 기록

- 보급하고 싶은 우수 사례

1. 관리자의 혁신적 리더십을 통한 다양한 학생 중심 교육활동 운영 환경 조성
 –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구축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육과정 재구성 등으로 다양한 배움 중심의 학생 몰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환경이 조성됨.
 –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고려한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2. 학생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학생 중심 활동 활성화
 – 어울림축제, 학생자치활동, 마을교육활동, 캠페인활동 등 준비과정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진행 과정까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운영하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활성화됨.
 –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인권교육 등)에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효용성을 신장시킴.
3. 학교 자율과제와 연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교육과정 재구성
 –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년별 특색있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교과 수업에 반영하여 동료장학(공개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강화하는 소통 중심의 수업 나눔으로 미래형 배움중심 수업 운영이 점차 확산됨.
 – 학년별 다양한 재구성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수업을 디자인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함.
4.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 교육과정 및 진로교육 운영
 – 학년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배움과 삶을 통합하는 배움중심 주제 통합(사람, 환경, 문화와의 어울림)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함.
 – 학기 초 진단활동, 기초학력 진단평가 분석, 학습결손의 원인 파악 및 지도계획 수립, 부진 예방을 위한 배움중심 수업, 디딤돌학습, 교과보충학습 등 책임 있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
 – 도레미 하모니, 즐겁게 하모니, 춤사위 하모니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활동을 운영하여 꿈을 찾고 끼를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의 장을 마련함.

Ⅴ. 맺는말

1. 높은 업무 책무성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구성원 간 소통에 힘쓰며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력을 높임.
2. 경험이 있는 교사를 초빙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한 현재의 학교 환경에서도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체

교원의 전문역량이 커짐.
3. 질 높은 수업과 생활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됨.
4.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능력과 자질이 풍부한 교사를 초빙하여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로의 변화가 필요함.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서촌초등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혁신학교로 운영되는데 현재 교무부장 선생님이 효율적으로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학운위원 : 학교오면 부담되는데 학부모총회시 넌센스 퀴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잘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5안건> 서촌초 병설유치원 유치원 규칙 개정 건

1. 제안자 발언

유치원규칙 내 학적처리 용어의 현행화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제안내용:

현 행	개 정 안
원아	유아 (용어의 변경)
제 6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 및 졸업	**제 6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휴학, 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제 14조 **(입학)** ③ 본 유치원에로의 입학의 시기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 14조 **(입학)** ③ -------- 9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⑤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 15조 **(재입학)** ① 만 4세반을 수료한 유아 중 만 5세반으로 재입학을 원하는 유아는 추첨 없이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퇴학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정원의 여유가 있고 재입학 사유가 정당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만 6세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 설>**	제 15조 **(- - -/편입학/전입학)**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① 본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 16조 **(전학)** ① 공·사립 유치원에서 본 유치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하며, 재학한 유치원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보호자가 전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 16조 **(휴학)** ①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조 **(퇴학)**	제 17조 **(자퇴/---)**

<table>
<tr>
<td><신 설>

유아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원서를 유치원장에게 제출한 자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신 설></td>
<td>①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②---------- 원장은 --------.
① <삭 제>

② <삭 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td>
</tr>
<tr>
<td>제 18조 (수료 및 졸업)
① 유치원의 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신 설></td>
<td>제 18조 (수료 및 졸업)
①----------
----------졸업을 인정---.
② ---------- 수업---- 유치원 수업일수의 ----------.

④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하고 5세 유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td>
</tr>
<tr>
<td>제 9 장 규칙 개정절차

<신 설></td>
<td>------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4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24조 제1항 10호 그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
<table><tr><th colspan="2">요 건</th><th>지도 방법</th></tr><tr><td>1</td><td>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반복적 지각 등)</td><td>·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실시</td></tr><tr><td>2</td><td>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하원 후 재등원(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보호자의 방문증 패용 등)</td><td>·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실시</td></tr><tr><td>3</td><td>시설 이용
(타 학교급 시설 이용시 안전 문제 등)</td><td>· 유아 및 보호자 상담
·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할 경우 주의</td></tr><tr><td>4</td><td>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생활지도가 있었음에도 교재·교구 또는 시설 파손등)</td><td>·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실시
· 유아와 보호자 상담
·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구</td></tr><tr><td>5</td><td>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등)
(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등)</td><td>·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td></tr></table>
② 위 사항에 대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제2장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③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td>
</tr>
</table>

<table>
<tr><td></td><td>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제24조 제3항 3호에 분리보관 가능 물품】
<table><tr><th colspan="2">요건</th><th>보관기간</th><th>보관장소</th><th>처리방법</th></tr><tr><td>1</td><td>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td><td rowspan="2">5일</td><td rowspan="2">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td><td rowspan="2">·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간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물품분리보관 일지 등 활용 가능)</td></tr><tr><td>2</td><td>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td></tr><tr><td>3</td><td>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고가의 물품, 녹음기,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과 같은 유사 대용 전자기기 등) 이와 같은 물품의 소지와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유치원에서 결정</td><td>활동시간</td><td></td><td>·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소지와 사용범위 작성
- 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보관
- 사용해야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td></tr></table>
제25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td></tr>
<tr><td>제 24조 (규칙 개정 절차)
제 25조 (시행규칙)
제 26조 (지도감독)</td><td>-----28조 ----------
---- 29조 ----------
---- 30조 ----------</td></tr>
<tr><td>부 칙
③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차개정안 2023.3.)</td><td>부 칙
③ ---------- 12월 12일--- --------.(-8----------.12.12.)</td></tr>
</table>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6안건> 2024학년도 학사일정 건

1. 제안자 발언

원활한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4학년도 학사일정 계획(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2. 제안내용:

2024학년도 학사일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2024학년도 총 수업일수: 190일(법정 수업일수)
2. 1학기 기간: 2024. 3. 1. ~ 8. 4.(99일)
   여름방학식: 2024. 7. 25.(목)
   여름방학 기간: 2024. 7. 26. ~ 8. 4.(10일)
3. 2학기 기간: 2024. 8. 5. ~ 2025. 2. 28.(91일)
   종업식 및 졸업식: 2024. 12. 17.(화)
   겨울방학 기간: 2024. 12. 18. ~ 2025. 2. 28(73일)
4. 학교장 재량휴업일(1일): 2024. 5. 1.(수)
5. 2024학년도 겨울방학에 학교 석면교체 공사가 계획되어 75일간의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짧게 운영함.
6. 학교행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음.

2024학년도 학사 달력

< 1학기: 2024.03.01.~08.04. / 2학기: 2024.08.05.~2025.02.28. >

※ 학교행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행사내용
- 삼일절(1일)
- ◉시업식, 입학식(4일), 급식미실시
- ◉학급다주간(4~15일)
- ◉학급임원선거주간(4~15일)
- ◉학부모총회(20일)
- ◉통합학급 장애이해교육 주간(18~22일)
- ◉진구사랑 주간(25~29일)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학부모 상담 주간(1~26일)
- ◉독도교육 주간(1~5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10일)
- ◉장애인 인권 주간(22~26일)
- ◉과학행사 주간(22~26일)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근로자의 날 휴업일 1일(1일)
-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2~14일)
- 어린이날(5일)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6일)
- ▪중간기말후 3일(4~6일)
- 부처님오신날(15일)
- ◉정보통신윤리주간(20~24일)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 ◉중일교육주간(3~7일)
- ◉환경교육주간(3~7일)
- 현충일(6일)
- ◉학부모참관 공개수업(12일)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교육과정 워크샵 주간(1~5일)
- ◉여름방학식(25일)
- <여름방학: 7.26~8.4 (10일)>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여름개학식(5일)
- ◉학급임원 선거(5~16일)
- 광복절(15일)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행사내용
- 추석연휴(14~18일)
- ▪가을단기방학 5일(14~18일)
- ◉진구사랑 주간(23~27일)
- ◉학부모 상담 주간(9.23~10.18)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개천절(3일)
- 한글날(9일)
- ◉학생 인권의 날
- ◉서촌어울림축제(18일)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대학수학능력시험(14일)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18~22일)
- ◉특수학급 친구초청의 날(18~22일)
- ◉교육공동체대토론회(27일)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교육과정 워크숍 주간(2~6일)
- ◉25학년도 학생자치선거(4일)
- ◉종업식, 중업식(17일), 급식미실시
- <겨울방학: 12.18~2.28 (73일)>
- 동성한결(25일)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삼산절(1일)
- 대설연휴(28~30일)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새학년도교육과정 워크샵(20~26일)

수업일수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재량휴업일수	총 수업일수	비고(비급식일)
	1학기	20	21	20	19	19		99	1	190	무상급식일수: 188일 (비급식일: 3.4, 12.17)
	2학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계	재량휴업일수		
		19	18	21	21	12	0	91	0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학사일정은 석면교체 공사로 인한 75일간의 공사기간을 인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재량휴업일은 5월1일 인데 근로자의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학운위원 : 공사필요기간 75일에 맞추었는데 그래도... 3월에 아동들이 등교 시 안전한지요?

- 교사들은 2월에 나와서 근무하며 석면공사는 초기에 위험하고 또 미리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7안건>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및 강사채용 계획 건

1. 제안자 발언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으로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확대를 위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및 강사채용 계획을 심의받고저 합니다.

2. 제안내용:

가) 2024학년도 방과후 운영계획

1) 운영시기: 2024.03~2025.02

2) 세부 운영 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안) 참고
(학사 일정 확정 및 감염병 상황에 따라 학운위 심의를 받아 변경 가능)

나) 2024학년도 개설 희망 부서

1) 기존 운영 13부서는 설문 결과 모두 최소 수강 인원을 초과하여 내년에 전 부서 개설 예정
- '요리 교실'은 저학년 정원을 안전상의 문제로 15명 내외로 줄이고자 함.
- 인원 감축으로 요리 교실 2개반 운영 여부 확인

2) 희망 부서 후보인 '생명과학' 부서 신설 여부 확인

다) 강사 채용계획
- 20224학년도 강사채용 계획서 참고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가. 방향

1)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가용(可用) 인적자원 최대한 확보 활용
2)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별 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강사 자격 기준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강사를 채용·관리

나. 강사 모집

1)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2)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4)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인원으로 구성한다. (면접심사는 외부인원 50%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계약 절차

1)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2)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의		공고		응모		심사		계약
연간 운영 계획 심의(강사 선정 계획 포함)	⇒	·공고문 게시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5일 이상 공고)	⇒	구비서류 제출	⇒	제안서 및 운영능력 심사	⇒	계약 체결

라. 계약 해지

❍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024학년도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채용 계획

1.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모집 프로그램 및 대상

프로그램	대상	기존수강료 -재료비 별도	프로그램	대상	기존수강료 -재료비 별도
주산암산 (1명)	1~2학년 3~6학년	27,000	코딩 (1명)	1~2학년 3~6학년	25,000

창의미술 (1명)	1~2학년 3~6학년	35,000	로봇 (1명)	1~2학년 3~6학년	25,000
독서토론 (1명)	1~2학년 3~6학년	27,000	토요축구 (1명)	1~2학년 3~6학년	26,000
컴퓨터 (1명)	1~2학년 3~6학년	25,000	농구 (1명)	1~2학년 3~6학년	26,000
클레이&쿠키 (1명)	1~2학년 3~6학년	25,000	영어회화(1명)	1~2학년 3~6학년	28,000
요리교실 (1명) - 2개반 개설 여부 - 저학년 정원 확인	1~2학년 3~6학년	25,000	방송댄스 (1명)	1~2학년 3~6학년	27,000
축구 (1명)	1~2학년 3~6학년	26,000	생명과학 (신설 여부)	1~2학년 3~6학년	

2.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상 시간표 및 장소

	월	화	수	목	금	토
2층과학실		클레이& 쿠키			요리교실	
5층과학실		창의미술		로봇교실		
운동장				축구		토요축구
2층 발표회장	방송댄스					
4층컴퓨터실				컴퓨터	코딩	
도담관			농구			
방과후1실		영어회화	영어회화		독서토론	
방과후2실				주산암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3. 채용 기간: 2024년 03월 ~ 2025년 02월(12개월)
4. 지원자격선발 및 임용 방법: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5. 일정
 1) 모집공고: 2023. 12. 13 (수)
 2)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2. 13.(수) ~ 2023. 12. 20.(수) 오후 4시까지 (직접 제출, 이메일 제출)
  나) 접수처: 서촌초등학교 2층 교무실
 3) 면접 일시: 2023.12.26 (화) ~ 12.27 (수) (예정)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개별통보-1차 발표 2023. 12. 22(금))
6. 방과후 강사 채용 방향
 1)강사 선정
  가)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등 최소 2곳 이상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고하여 모집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함
  나)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 할 수 있음
   ※ 학기 중 강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도 차점자로 계약 가능.
   ※ 단, 강사 선정계획에 포함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은 경우 가능.
  다) 평가위원회 구성
   ①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 시 외부위원(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이 50%이상 참여
   - 제안서(서류심사) 평가 시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
   ② (역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제안서(서류심사) 및 프로그램능력평가(면접 심사),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각종 심사 활동
   ③ (자격) 평가대상자와 이익 및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평가위원 수는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서 학교장은 제외

 2)강사 임용 및 관리
  가) 강사 임용 및 근무
   ① 강사임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강사선발 , 서류(이력서, 강의계획서 등)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강사의 자격
   ①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②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③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④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⑤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다) 강사구비서류

구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구비서류	
방과후학	지원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서식1)

교 강사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채용후 제출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청렴 이행 서약서
비고	1.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생략, 범죄경력회신서 추가 2. 외부강사 채용 서류 간소화, 타학교에 재 채용시 제출 서류 최소화, 지역교육청 등록 강사의 경우 교육장 확인으로 대체 등 3. 보육 전담 강사의 경우 소지기능 자격증은 보육사, 사회복지사, 유·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단, 지역여건상 상기 자격소지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활동이 가능한 자를 채용한다.	

※ 우수 강사로서 재임용할 경우 채용신체검사서와 주민등록초본 구비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현재 요리 교실 정원이 25명인데 안전상의 문제로 15명 내외로 줄여서 2개반으로 운영해달라고 해서 심의받고저 합니다. 현재 호응도가 매우 좋아서 인기가 있는 부서입니다.

학운위원 : 요리 교실은 과학실에서 운영되는데 내년에 따로 교실 확보가 가능한지요?

- 아동들의 하교시간도 고려해야됩니다. 그리고 요리 교실 확보가 어려워서 요리 강사 외 보조 강사가 같이 들어오면 정원은 25명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5명으로 인원제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생명과학' 부서 신설 희망이 들어와서 신설 해도 되는지 심의받고저 합니다.

학운위원 :'생명과학' 부서가 옛날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없어져서 아쉬웠습니다.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가능하면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8안건> 다문화학생 프로그램 운영계획 심의(안) 건

1. 제안자 발언

2023 다문화학생 꿈탄탄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2023.11.23.)에 의거하여 강사수당, 운영비(교수학습지원비, 교재구입비, 업무추진성 경비 등)를 투명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내용

1) 목적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한국어 지원으로 한국어 능력 함양

◦다문화가정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

◦한국어능력 및 학습 한국어교육으로 미래 인재로의 성장 지원

2) 세부 추진 내용

◦ 운영 방법

-담당: 담임교사

-대상과목: 한국어 수업, 교과 기초 수업, 독서 수업, 교과 용어 수업

-학습장소: 각 반 교실

◦기간 및 대상, 운영 영역

- 기간: 12월 14일(목) ~ 1월 4일(목)
- 대상: 다문화가정 학생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순	운영 영역	운영 방법	대상 학생
1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2명/기초학력 1명
2	독서수업,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3명/기초학력 1명
3	독서 수업 및 기타	대면 수업	다문화 1명/기초학력 1명
4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2명/기초학력 1명
5	한글 문해력 향상 및 우리나라 알아보기	대면 수업	다문화 4명
6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2명
7	한국어 수업 및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2명/기초학력 1명
8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1명/기초학력 2명
9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1명/기초학력 1명
10	한국어 수업, 교과 기초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1명/기초학력 2명
11	한국어 수업	대면 수업	다문화 2명/기초학력 1명

3) 예산 사용 계획

◦ **소요예산: 총 6,000,000원**

(학교 규모 및 밀집도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원 예정)

◦ 산출내역

항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율(%)
강사비	11개 프로그램*13차시*40,000원=	5,720,000	95.4
업무추진성 경비 (학생 간식비)	8,750원*32명*1회=	280,000	4.6
합계		6,000,000	100

4) 기대 효과

◦ 다문화가정 학생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한국어 사용능력 및 기초학력 향상

◦ 학기 사이에 존재하는 학습 공백을 피하고 교과별 학습 언어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 부담감 완화 및 교육과정 정상화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학운위원 : 모든 학급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요?

- 다문화 학생이 중심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것으로 모든 학교, 모든 학급 참여가 의무는 아니며 또한 교실바닥 공사로 인해 짧게 운영됩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9안건> 2023학년도 서촌초등학교회계 2차 추경 예산 건

1. 제안자 발언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합니다.

2. 제안내용:

가. 세입액: 1,954,297,000원

나. 세출액: 1,954,297,000원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바랍니다. 또 추가 추경금액 요약본 참고 바랍니다.

3.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학운위원 : 텃밭 강사비가 많은 것 아닌가요?

- 여러번에 이루어진 것을 합한 것이고요. 텃밭 예산은 모든 학교가 받는 예산이 아니고 한 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목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학운위원장 : 안건에 대한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 예.

▶ 학운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